

# 서울특별시교육청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황인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714
----------	------

발의년월일 : 2020년 8월 11일  
발 의 자 : 황인구 의원(1명)  
찬 성 자 : 장인홍, 전병주, 김용석,  
김창원, 김제리, 안광석,  
박기열, 김희걸, 신원철,  
김수규, 김광수, 김화숙,  
김호진, 홍성룡, 이병도,  
김경영, 김경우, 이경선,  
박순규, 성흠제, 한기영,  
노식래, 김혜련, 김기대,  
이영실, 서운기 의원(26명)

##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공익적 역할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농업 전개에 맞춘 인재를 양성하며, 상호 교류를 통한 교육 분야의 도시와 농어촌 간 격차를 해소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도농교육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나. 도농교육교류협력의 대상 선정과 내실화, 홍보 및 조사·연구, 자매

결연 활성화 및 취소·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

다. 도농교육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

라. 도농교육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 (안 제14조)

마. 도농교육교류협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5조)

바. 농업교육 및 도농교육교류협력의 진흥을 위하여 도농교류 활성화 선도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함 (안 제16조)

사. 도농교육교류협력 및 농업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공무원 또는 학생, 학급, 학교 등의 포상에 대해 규정함 (안 제17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학생들의 애착심을 키우고, 도시와 농어촌 간 교육격차 해소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도농교육교류협력”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각 급 학교가 농업교육 내실화, 농어촌체험교육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류협력대상과의 자매결연, 업무협약 체결, 교육 지원, 교직원 및 학생 교류 등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3. “교류협력대상”은 농어촌의 지방자치단체와 교육행정기관, 각 급 학교 및 농업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 등을 말한다.
4. “교육지원”이란 농어촌의 교육 발전을 위하여 교류협력대상과 그에 속한 교직원 및 학생 등에게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자매결연”이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각 급 학교가 농업교육 및 도농교육교류협력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6. “농업교육”은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농어업 및 농어촌에 관한 지식, 기능 및 태도의 함양을 위하여 교육과정 및 교육과정 외에서 진행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도농교육교류협력을 촉진하여 학생들이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교양을 높이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도농교육교류협력 전개를 통해 도시와 농어촌이 가진 인적·물적자원의 교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시와 농어촌 간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업교육과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교류협력대상의 선정) 교육감과 교육장, 각 급 학교의 장 및 직속 기관의 장이 농어촌의 교류협력대상과 자매결연, 업무협약 체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1. 상호 신뢰성
2.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
3. 행·재정 수준, 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의 교류여건
4.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를 통한 실익 등

제6조 (도농교육교류협력의 내실화) ① 교육감은 도농교육교류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도농교육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및 교육장, 각 급 학교의 장은 도농교육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규정된 도농교류의 날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의한 농업인의 날에 도농교육교류협력에 대한 홍보 및 농업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및 조사·연구 등) ① 교육감은 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도농교육교류협력에 대한 교원과 학생, 학부모 등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가치를 알리고 농업교육과 도농교육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및 전문가 자문, 교원 대상의 연수프로그램 개발·운영, 도농교육교류협력 운영 지침과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자매결연의 활성화) 교육감은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각 급 학교와 농어촌의 활발한 교류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9조 (도농교육교류협력의 취소·중단) ① 교육감 및 교육장, 각 급 학교의 장과 직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자매결연 및 업무협약 등 도농교육교류협력을 취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1. 해당 교류협력대상과의 관계에 있어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2. 해당 교류협력대상과의 실제적인 교류두절로 유명무실해진 경우
3. 그 밖에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0조 (도농교육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도농교육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농교육교류협력 추진 계획 및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기업체, 공공기관, 대학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포함하여 도농교육교류협력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농교육교류협력 추진 중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도농교육교류협력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농교육교류협력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9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소관 부서 과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계, 학계, 관련 전문기관, 시민사회단체 및 그 밖에 농업교육 또는 생태·환경교육, 도농교육교류협력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 임직원

3. 그 밖에 교육감이 도농교육교류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4조 (도농교육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도농교육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중간지원 조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도농교육교류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농교육교류센터는 도농교육교류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교육 및 도농교육교류협력 관련 사업 홍보, 행사 개발 및 지원
2. 농업교육 및 도농교육교류협력 교육 콘텐츠,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보급
3.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한 농업교육 및 도농교육교류협력 관련 교육·연수프로그램 개발·운영
4. 농업교육 및 도농교육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5. 농업교육 및 도농교육교류협력 관련 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
6. 농업교육 내실화 및 도농교육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연구
7. 그 밖에 농업교육 및 도농교육교류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교육감은 도농교육교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업교육과 도농교육교류협력에 전문성을 갖춘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교육감과 교육장, 각 급 학교의 장 및 직속 기관의 장은 농업교육 및 도농교육교류협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류협력대상,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16조 (선도학교 운영) ① 교육감은 농업교육 및 도농교육교류협력의 진흥을 위하여 도농교류 활성화 선도학교(이하 “선도학교”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선도학교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성화된 맞춤형 농업교육 및 도농교육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선도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교육감은 도농교육교류협력 및 농업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공무원 또는 학생, 학급, 학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교육청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7조(홍보 및 조사·연구 등), 제10조(도농교육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도농교육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 제15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제16조(선도학교 운영), 제17조(포상)에 따라 비용 발생
- ※ 단, 같은 조례안 제6조(도농교육교류협력의 내실화)에 따른 비용은 서울시교육청 ‘서울형 자유학기제운영’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자유학기제 운영기반 구축(중학교 미래농업 교육(농촌학교) 운영 지원)’ 및 ‘학교현장체험학습버스운영(미래농업교육 농촌학교 체험활동 지원)’ 사업, ‘과학교수학습지원’의 세부사업 ‘서울 학생, 자연과 친구 되기 ((미래교육 농업체험) 서울 학생, 농부 되기 체험 지원(스마트팜 연계))’로 기 추진하고 있으므로 서울시교육청 재정수입의 순감소나 재정지출의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 아님(붙임 참고)

### 2. 비용추계의 전제

#### 가. 대상

- 홍보 및 조사·연구(제7조)
- 도농교육교류협력위원회 설치·운영(제10·13조)
- 도농교육교류센터 설치·운영(제14조)
-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제15조)
- 선도학교 운영(제16조)
- 포상(제17조)

#### 나. 전제

- 홍보 및 조사·연구비용은 3년 주기로 연구용역 시행을 전제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 추진 사업인 ‘인권교육 수업자료 개발·보급’사업예산(운영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의 사례를 근거로 비용추계
- 도농교육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의 비용이 ‘인권교육 수업자료 개발·보급’의 연구용역비, 운영비, 업무추진비와 유사하다고 가정

- 도농교육교류협력위원회 설치·운영비용은 위원회 구성을 9명으로 하되,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소관 부서 과장) 1명을 포함하고 8명은 외부위원으로 가정하였고, 운영회의 운영은 연 2회 개최를 가정(정기회 2회 기준)
- 도농교육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포함 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사업비 등의 비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기 추진 사업인 ‘취업지원센터운영’사업의 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사업비 등과 유사하다고 가정하고 비용추계
-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비용은 이와 유사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 추진 사업인 ‘대외교육 협력관리(자치단체 등 협력사업 및 협의체 운영)’사업예산을 준용하여 비용추계
- 선도학교 운영비용<sup>1)</sup>은 서울시교육청이 매년 선도학교 2개교를 선정하여 10,000천원을 지원한다고 가정하고 비용추계
  - 도농교류 활성화 선도학교 지원 비용은 서울시교육청 기 추진 사업인 ‘자유학기제 운영기반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중학교 미래농업교육(농촌학교) 운영 지원을 2개교를 선정하여 10,000천원을 지원하고 있는 바, 선도학교에 대한 지원 비용(10,000천원)도 이와 유사하다고 가정
- 포상 비용<sup>2)</sup>은 서울시교육청 기 추진 사업인 ‘교육지원기관행정개선활동지원’사업예산 중 보전금(기타포상금)과 유사하다고 가정
- 물가상승률 미반영
-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다. 추계기간 : 5년

라. 방법

-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토대로 작성

1) 「2020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르면, 교육활동 지원(정책사업)>연구학교운영(단위사업)>연구학교 운영(세부사업명)>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학교, 선도학교, 혁신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사업해설)

2) 「2020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르면 이천지출(목그룹)>포상금등(목)>기타포상금(세목)>교육행정기관 주관 각종 교육 및 교육행정 성과의 제고를 위한 평가 및 경시대회 등 추진에 따른 포상금(직원의 사기진작 등 기관 운영을 위한 사업의 경우 업무추진비에 편성하고, 기관포상의 경우 포상계획 수립 시 포상금 집행을 위한 최소한의 지침을 설정하여 소모적이고 비교육적 집행을 지양)

###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 2,572,250천원(연평균 514,45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안제7조	홍보 및 조사연구	57,400	-	-	57,400	-	114,800
	안제10·13조	도농교육교류협력위원회 설치·운영	2,940	2,940	2,940	2,940	2,940	14,700
	안제14조	도농교육교류센터 설치·운영	463,000	463,000	463,000	463,000	463,000	2,315,000
	안제15조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4,950	4,950	4,950	4,950	4,950	24,750
	안제16조	선도학교 운영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안제17조	포상	600	600	600	600	600	3,000
	소계(b)	548,890	491,490	491,490	548,890	491,490	2,572,250	
□총 비용(b-a)		548,890	491,490	491,490	548,890	491,490	2,572,250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당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이정수

분석관 원동아

☎ 02-2180-7953

e-mail : dongya1@seoul.go.kr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1. 비용요소

- 홍보 및 조사·연구(제7조)
- 도농교육교류협력위원회 설치·운영(제10·13조)
- 도농교육교류센터 설치·운영(제14조)
-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제15조)
- 선도학교 운영(제16조)
- 포상(제17조)

### 2. 세부추계내역

가. 총비용 ≙ 2,572,250천원(연평균 514,450천원)

- 총비용 = 홍보 및 조사·연구 + 도농교육교류협력위원회 설치·운영+ 도농교육교류센터 설치·운영 +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 선도학교 운영 + 포상  
 = 114,800천원 + 14,700천원 + 2,315,000천원 + 24,750천원+ 100,000천원 + 3,000천원  
 = 2,572,250천원

### 나. 세부 산출 내역

1) 홍보 및 조사·연구 ≙ 114,8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text{연간홍보및조사·연구비용})_i = 114,800\text{천원}$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 연간 홍보 및 조사·연구 비용 ≙ 57,400천원(3년 주기로 시행 전제 : 1차년도 및 3차년도 비용 발생)

- 근거 : 서울시교육청 기 추진 사업 '인권교육 수업자료 개발·보급' 사업예산 사례 적용

※ 2020년 '인권교육 수업자료 개발·보급' 예산 준용

· 내용 :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인권교육 지도자료 개발

· 소요예산 : 57,400천원

· 운영비	=	22,200	천원
- 심사수당	100,000원 × 11명 × 2회	=	2,200 천원
- 편집 및 인쇄비	10,000원 × 1,000부 × 2식	=	20,000 천원
· 연구개발비	=	35,000	천원

- 학생인권교육자료 연구용역	17,500,000원 × 2식	=	35,000	천원
· 업무추진비		=	200	천원
- 업무협의회비	20,000원 × 10명 × 4회	=	200	천원

자료 :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 2) 도농교육교류협력위원회 설치·운영 ≙ 14,7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도농교육교류협력위원회설치·운영비용)<sub>i</sub> = 14,700천원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 연간 위원회 설치·운영비 ≙ 연간 위원회 참석수당 + 연간 위원회 업무추진 경비  
 ≙ 2,400천원 + 540천원  
 ≙ 2,940천원

· 연간 위원회 참석수당 = 구성원 수 × 1인당 회의참석 수당 × 1년간 회의개최 횟수  
 = 8명 × 150,000원 × 2회  
 = 2,400천원

※ 참석수당 지급기준은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기본료 10만원, 2시간 초과 비용 5만원 등 총15만원 기준

※ 참석수당 지급대상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교육청 소속 공무원1명 총2명을 제외한 8명 지급 전제

· 연간 위원회 업무추진 경비 = 전체 위원 수 × 1인당 업무추진비 단가 × 1년간 회의개최 횟수  
 = 9명 × 30,000원 × 2회  
 = 540천원

※ 1인당 업무추진경비 단가는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3만원으로 가정

## 3) 도농교육교류센터 설치·운영 ≙ 2,315,0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도농교육교류센터설치·운영비용)<sub>i</sub> = 2,315,000천원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 연간 도농교육교류센터 설치·운영비용 ≙ 463,000천원

- 근거 : 서울시교육청 기 추진 사업 '취업지원센터운영' 사업예산 사례 적용

※ 2020년 '취업지원센터운영' 예산 준용, 세부사항은 첨부자료 참고

· 내용 : ①찾아가는 취업센터운영, 홍보자료 책자 제작, 우수취업처 발굴 등 취업처 발굴 사업, ②취업지원 관 인력 관리를 포함한 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③ 학생 및 교사, 학부모 대상 역량강화 사업, ④

산관학 협력 프로그램 운영, ⑤또래노동자킵이단 운영 등 특색사업, ⑥취업기능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취업기능강화 운영비

· 소요예산 : 463,000천원

· 합계	=	463,000	천원
- 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	188,398	천원
- 역량강화사업	=	61,473	천원
- 특색사업운영	=	7,684	천원
- 산관학 협력 사업	=	31,100	천원
- 취업기능강화운영비	=	47,750	천원
- 취업처발굴사업	=	126,595	천원

자료 :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 4)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 24,75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지역사회협력망구축비용)<sub>i</sub> = 24,750천원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 연간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비용 ≙ 4,950천원

- 근거 : 서울시교육청 기 추진 사업 ‘대외교육협력관리(자치단체 등 협력사업 및 협의체 운영)’ 사업예산 사례 적용

※ 2020년 ‘대외교육협력관리(자치단체 등 협력사업 및 협의체 운영)’ 예산 준용

· 내용 : ① 교육행정협의회, 교육복지민관협의회 등 자치단체 및 지역단체와 협의회 운영

②교육협력사업 발굴 및 조정 등 각종 협의 추진

③교육협력사업 실무협의회 및 담당자 회의

· 소요예산 : 4,950천원

· 운영비	=	2,550	천원
- 협의체 운영 사무용품비	200,000원×3회 =	600	천원
- 회의자료 및 운영보고서 인쇄	450,000원×3회 =	1,350	천원
- 위원회 외부위원 참석수당	100,000원×2명×3회 =	600	천원
· 업무추진비	=	2,400	천원
- 실무협의회 및 평가회	20,000원×15명×8회 =	2,400	천원

자료 :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 5) 선도학교 운영 ≙ 100,0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선도학교운영비용)<sub>i</sub> = 100,000천원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 연간 선도학교 운영 비용 ≙ 20,000천원

- 근거 : 서울시교육청 기 추진 사업 ‘중학교 미래농업교육(농촌학교) 운영 지원(연구학교)’ 사업예산 사례 적용

- ※ 2020년 ‘자유학기제 운영기반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학교 미래농업교육 (농촌학교) 운영 지원(연구학교) 10,000천원(1개교 당) 예산 준용
- 내용 : 중학교 미래농업교육(농촌학교) 운영 지원
- 소요예산 : 20,000천원

· 학교회계전출금	=	20,000 천원
- 학교회계전출금(공립, 연구학교)	10,000,000원 × 2교 =	20,000 천원

자료 :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 6) 포상 ≙ 3,0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text{연간포상비용})_i = 3,000\text{천원}$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 연간 포상 비용 ≙ 600천원

- 근거 : 서울시교육청 기 추진 사업(교육지원기관행정개선활동지원)의 ‘보전금(기타포상금)’ 예산액 사례 적용

※ 2020년 서울시교육청 기 추진 사업인 ‘교육지원기관행정개선활동지원’사업예산 중 보전금 (기타포상금) 예산 준용

- 내용 : 각종 행사 및 직장교육 연수행정지원
- 소요예산 : 600천원

· 보전금	=	600 천원
- 기타포상금	600,000원 × 1식 =	600 천원

자료 :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붙임】 서울시교육청 기 추진사업

(단위:천원)

구분	세부사업명 (세세부사업명)	2020년 예산	사업내용
제6조(도농교육교 류협력의 내실화)	서울형자유학기제운영 (자유학기제 운영기반 구축)	242,420	·중학교 자유학년제 체험처 및 체 험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자치구,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 기간 : 2020. 1. ~ 12. - 대상 : 중학교 전체(387교) - 내용 : 자유학년제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유학기(학년) 활동 안정화 연구학교 운영 지원 ·자유학년제 성과 점검을 통 한 정책 추진 방향 모색 ·중학교 미래농업교육(농촌 학교) 운영 지원 - 소요예산 : 242,420천원
	학교현장체험학습버스운영	1,100,000	·학교 현장체험학습 버스 지원 - 대상 : 초등학교 515교, 중학교 385교, 고등학교 279교 - 내용 : 정규 교육과정 내 교과 연 계 및 방과 후 학급 단위 창의체험활동 지원 · 미래농업교육 농촌학교 체 험활동 지원 ·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운 영 프로그램 참여 지원 - 소요예산 : 1,100,000천원
	과학교수학습지원 (서울 학생, 자연과 친구 되기)	15,360	- 대상 : 서울특별시교육청 전체 초 ·중·고등학교 총 1,319개교 - 내용 : ·(상반기, 상시) 케일, 나 비알, 초파리, 물벼룩, 쪼 신벌레, 송사리, 히드라, 메뚜기 등 ·(하반기, 상시) 개구리 밥, 부레옥잠, 물수세미, 생이가래 등 총 10종 생 물학습자료 공급 ·(미래교육 농업체험) 서울 학생, 농부 되기 체험 지원(스마트팜 연계) - 소요예산 : 15,360천원

자료 :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